



#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강화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사법권 부여될 듯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에게까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대한 사법처리 권한이 주어지는 내용이 국회에 상정 중이어서 법안 통과에 대비한 인쇄업계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월 1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소속 SW 불법 복제 단속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권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예정대로라면 오는 5월 쯤 해당법률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정보통신부 산하 각 지방 체신청이 운영중인 SW 불법 복제 상시 단속반 소속 공무원과 정보통신부의 단속을 지원하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 (Korea Software Property Council))등에 까지 사법권이 주어질 전망이어서 검찰과 경찰만이 사법권을 가지던 때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상시 단속반이 검찰을 동행하지 않았을 경우 단속대상 업체 등에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해당자들에게까지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어 단속의 강도가 높아지고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 신속한 법적 제재조치가 가능하게 된다.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SPC도 2월 28일 대한인쇄문화협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올해는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근절 의지가 더욱 강화되어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SPC는 또한 "귀 협회의 많은 회원사들이 SW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인쇄 출판 관련 소프트웨어인 폰트를 비롯한 Quark사의 X-press, Coreldraw, Adobe사의 그래픽 소프트웨어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불법 복제품을 사용하는 일부 관련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제보가 최근 협회 제보라인을 통해 접수된 바 있다"라며 소프트웨어 단속이 임박했음을 전해왔다.

적절한 대처 통해  
불미스러운 일 막아야

굳이 저작권자의 신고가 아니더라도 인쇄 및 인쇄관련업체들도 소프트웨어 복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인쇄업체의 영세성과 하드웨어 판매



회사들의 실적 지향주의가 맞물려 장비 구입 시부터 불법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장비가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장비와 함께 무상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정품 CD와 함께 제공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프로그램만 설치된 상태에서 제공된 하드웨어의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불법 소프트웨어이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관행처럼 굳어진 불법소프트웨어 유통은 어디까지나 관행일 뿐이며 인쇄업체의 영세성이 잘못된 관행에 면죄부를 주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의 사용권한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1 hard 1 copy'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즉, 3대의 매킨토시를 보유한다면 소프트웨어도 3copy가 필요한 것이며, 라이선스의 경우도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에 불과해 필요한 copy 수에는 변화가 없다.

세어웨어 프로그램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 일부 개발회사의 경우 소프트웨어를 알리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세어웨어 소프트웨어를 나누어 준다.

하지만 세어웨어 프로그램은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간 연장은 반드시 소프트웨어 사용 권한을 얻어야만 가능하다.

동일한 프로그램이라도 버전을 확인해야 한다. 흔히 프리웨어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 알집 프로그램의 경우 4.95버전 이하는 무료이지만 이상 버전은 유료버전이며, 일부 버전은 개인사용은 허가하면서도 사무실에서의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지는 말아야 한다. 정품 CD를 분실했을 경우에 자칫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자로 몰릴 수 있다. 분실을 대비해 정품 구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등을 반드시 챙겨 두어야 한다.

불법소프트웨어를 지우는 것도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하다. 과거에 사용한 불법 프로그램도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하드디스크 등에 남아있는 흔적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불법 프로그램은 차체에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좋다.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관계기관

의 단속에 걸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형벌을 동시에 받게 된다.

또한 저작권 소유자가 요구할 경우 합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며,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증거물로 하드웨어를 압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처와의 계약을 이행 못할 상황 등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SPC는 "매년마다 SW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많은 기업과 개인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사상, 형사상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품사용' 이러한 작은 실천이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침해행위에 따른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며, 무엇보다 바른 정품사용 문화의 정착과 정보화를 앞당기는 지름길이라 하겠습니다"라며 정품 사용을 당부했다.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소프트웨어 복사본 단속에 대비하여 코렐코리아(02-2280-2060), 씨앤비시스템(02-2279-9133)과 업무협정을 맺고 매킨토시프로그램과 코렐프로그램 공동구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용우 기자 <photoyw@print.or.kr>

## 종이 관련 상식

《아트지 100g/m<sup>2</sup>에서 단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이를 나타내는 단위는 크게 규격과 무게로 나타내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무게 단위를 평량이라 합니다. 평량은 가로 세로 1m 크기의 종이에 대한 그램수(g/m<sup>2</sup>)입니다. 흔히들 평량을 종이의 두께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나 평량은 종이의 중량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주로 구매하는 인쇄용지의 주·부원료 구성비를 알고 싶습니다.》

종이의 주·부원료 구성비는 평량에 따라 차이가 있고, 백상지와 아트지처럼 종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백상지 100g/m<sup>2</sup>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주원료 펄프 76.5%
- ◆ 부원료 Ash (회분) 15% - 인쇄적성을 좋게 하기 위한 부원료
- Starch(전분) 4.5% - 잉크가 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부원료
- ◆ 수분 4%

《4×6판의 유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4×6판은 일본에서 유래된 종이의 규격입니다. 일본의 메이지 시대에는 영국에서 종이를 수입했는데 그 사이즈가 762mm×1,091mm로 이전 일본에서 주로 사용하던 규격인 미농판(272mm×394mm)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미농판의 8배가 되게 종이규격을 788mm×1,091mm 사이즈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격은 32매절하여 자투리를 제거하면 4寸2分×6寸2分의 체크기가 되었는데 훗날 4와 6만을 따서 부르기를 4×6판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백상지(Uncoated woodfree paper)와 스노우화이트지(Coated woodfree matte paper)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백상지는 초지기에서 나온 종이를 제품화한 비도공지인 반면, 스노우화이트지는 백상지를 도포기를 통해 도공을 한 도공지라는 점에서 두 종이는 확연히 다른 종이입니다. 따라서 스노우화이트지는 분명히 아트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쇄물에 차분함을 주어 눈의 피로감을 낮추기 위해 광택 처리를 하지 않은 종이를 말합니다. 스노우화이트지는 생산초기 겉모양이 마치 흰눈같이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